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89
------------	------

제출년월일 : 2014.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에 관한 규정과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59호, 2014.1.1.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것을 예산편성 당시 금액이 확정되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3조제1항제2호,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로, “직전 연도”를 “전전년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를 “2013년부터는 전전년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직전 연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p> <p>2.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직전 연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p> <p>3.~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호 ----- ----- ----- -----</p> <p>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1항제2호 ----- ----- 전전년도 ----- ----- ----- -----</p> <p>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인천광역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2013년부터^는 전전년도 ----- ----- ----- -----.</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1만분의 1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1만분의 1.5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정철환